

의안번호	2204112
의 퇴 인	김용태의원
회 답 일	2024.11.11.
추계번호	24D391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비용추계 결과

- 대한민국순직군경유족회를 설립·지원하는 경우 동 단체의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보조금 지원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41억 5,200만원(연평균 8억 3,0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대한민국순직군경유족회를 국가유공자단체에 추가 (안 제3조)	798	814	830	847	864	4,152	83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조 (회원)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에서 순직군경(「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과 공상군경(「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을 삭제하고, 순직군경과 공상군경을 회원으로 하는 대한민국순직군경유족회를 설립하여 국가유공자단체에 추가	의무규정

III.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3조(회원)	○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은 대한민국전물군경유족회의 회원 중 순직군경(「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과 공상군경(「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을 삭제하고, 이들을 회원으로 하는 대한민국순직군경유족회를 설립하여 국가유공자단체에 추가하도록 규정
- 개정안에 따른 경우, 대한민국전물군경유족회는 전물군경 유족과 전상군경 유족으로 구성되어, 회원수는 현행 93,514명에서 76,704명으로 감소
 - 새로 설립되는 대한민국순직군경유족회는 순직군경 유족과 공상군경 유족으로 구성되며, 회원수는 16,810명으로 예상됨

[표 2] 현행법과 개정안에 따른 전물군경유족회 및 순직군경유족회 회원 수 변화

(단위: 명, %)

현행			개정안	
전물군경유족회	93,514(100.0%)		전물군경유족회	76,704(82.0%)
- 전물군경 유족	31,204(33.4%)	⇒	- 전물군경 유족	31,204(33.4%)
- 전상군경 유족	45,500(48.7%)		- 전상군경 유족	45,500(48.7%)
- 순직군경유족	10,188(10.9%)		순직군경유족회	16,810(18.0%)
- 공상군경유족	6,622(7.1%)		- 순직군경유족	10,188(10.9%)
			- 공상군경유족	6,622(7.1%)

자료: 국가보훈부

- 대한민국전물군경유족회의 인건비 및 운영비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고, 대한민국순직군경유족회는 최근 신규설립 공법단체인 5·18민주화운동 공로자회 수준으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함
- 국가보훈부는 개정안에 따른 경우, 대한민국순직군경유족회 회원이 16,810명 수준으로 적지 않지만, 4개 지부를 설립할 예정으로 최근 신규 설립 공법단체인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수준으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임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를 적용함¹⁾
- 안 부칙에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과 법안 심의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국가유공자 등 단체에 대한민국순직군경유족회 추가(안 제3조)

- 대한민국순직군경유족회는 최근 신규설립 공법단체인 5·18민주화운동 관련 공법단체 수준으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함
- 유급 임·직원은 본부 12명, 지부 16명(4개지부, 지부당 4명) 등 28명으로 가정함
 - 5·18민주화운동 관련 공법단체 유급 임·직원은 21~33인(본부 12인, 지부 9~21인) 규모임

[표 3] 5·18민주화운동 관련 보훈공법단체의 유급 임·직원 현황

(단위: 명)

	회원수	유급임직원		
		합계	본부	지부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2,118	33	12	21
5.18민주유공자유족회	1,033	21	12	9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1,330	27	12	15

자료: 국가보훈부

- 2024년 예산 기준 5·18민주화운동 관련 공법단체의 유급 임·직원의 1인당 인건비는 2,350만원 수준이며, 대한민국순직군경유족회의 유급 임직원 수 28인을 고려할 경우, 인건비 총액은 6억 5,800만원으로 추정됨

1)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2024.10)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소비자물가상승률(CPI)	2.1%	2.0%	2.0%	2.0%	2.0%	2.0%

[표 4] 5·18민주화운동 관련 보훈공법단체의 유급 임·직원의 연간 인건비 현황(2024년 기준)
(단위: 명, 백만원)

	임직원 수	인건비 총액	1인당 인건비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33	773	23.4
5.18민주유공자유족회	21	495	23.6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27	634	23.5

주: 2024년 예산 기준, 기관부담금 포함
자료: 국가보훈부

[표 5] 대한민국순직군경유족회 인건비 추정(2024년 기준)
(단위: 명, 백만원)

	인원	1인당 인건비	총계
대한민국순직군경유족회	28	23.5	658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2024년 예산 기준 5·18민주화운동 관련 공법단체의 인건비를 제외한 사업비와 운영비는 평균 1억 800만원 수준

[표 6] 5·18민주화운동 관련 보훈공법단체의 운영비 및 사업비 현황(2024년 기준)
(단위: 백만원)

	사업비	운영비	합계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7	74	131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6	34	90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56	48	104
합계	169	156	325
평균	56	52	108

주: 2024년 예산 기준
자료: 국가보훈부

□ 2024년 예산 기준 5·18민주화운동 관련 공법단체의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를 고려하여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2024.10월)한 대한민국순직군경유족회의 설립·지원 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은 아래 표와 같음

[표 7] 대한민국순직군경유족회의 설립·지원 시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인건비 등	685	699	713	727	742	3,565	713
운영비	54	55	56	57	59	282	56
사업비	59	60	61	62	64	305	61
합계	798	814	830	847	864	4,152	83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추계결과

- 대한민국순직군경유족회를 설립·지원하는 경우 동 단체의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보조금 지원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41억 5,200만원(연평균 8억 3,000만원)으로 추계됨

[표 8]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대한민국순직군경유족회를 국가유공자단체에 추가 (안 제3조)	798	814	830	847	864	4,152	83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전수연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전수연	02-6788-4667	syjeon@assembly.go.kr